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의 평가기준

## 1. 총괄

가. 평가점수 : 100점

나. 적격여부 : 적격여부 심사항목 중 어느 하나가 부적합에 해당되는 경우 실격 처리 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 2. 안전점검비용에 따른 평가 적용기준

점검비용	구분		평가방법
5백만원 미만	수행능력	-	◦ 제안된 점검비용 / 제안된 점검비용의 산술 평균에 따라 “가격점수 평가기준” 적용
	가격점수	100점	
5백만원 이상~1억원 미만	수행능력	40점	◦ 평점 = $\frac{\text{평가점수}}{100} \times 40(\text{점})$ ◦ 제안된 점검비용 / 제안된 점검비용의 산술 평균에 따라 “가격점수 평가기준” 적용
	가격점수	60점	
1억원 이상	수행능력	60점	◦ 평점 = $\frac{\text{평가점수}}{100} \times 60(\text{점})$ ◦ 제안된 점검비용 / 제안된 점검비용의 산술 평균에 따라 “가격점수 평가기준” 적용
	가격점수	40점	

가격점수 평가기준	배점기준	점수
제안된 점검비용 / 제안된 점검비용의 산술평균	90%미만	해당배점의 100%
	90%이상 95%미만	해당배점의 98%
	95%이상 100%미만	해당배점의 96%
	100%이상 105%미만	해당배점의 94%
	105%이상	해당배점의 92%

#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사업명		
가격제안	금 원정( ₩ )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본인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비 입찰서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서 성실히 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1. 본 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른 파주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2에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 지정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2. 파주시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제출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및 서류의 내용 등을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실격 처리하여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3. 파주시는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4. 파주시는 선정된 수행기관이 해당 건설공사 계약상대자와 반드시 동일가격으로 계약체결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5. 파주시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른 초기점검과 정기안전점검 등에 대하여 일괄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6. 가격점수의 평가점수 합이 최고점수가 동일한 제안 참여 수행기관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가격점수가 높은 수행기관을 우선순위로 하고, 가격점수도 동일하면 추첨에 따라 지정한다.
7.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역의 특성에 따라 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